

# 2021년도 제8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4. 22.(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79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947건(안건번호 제2021-39996호~41163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39996호~40006호(순번 1번~11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와 출판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만화와 출판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40007호(순번 12번)는 블로그에서 일본 만화를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40008호~41142호(순번 13번~1147번)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907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1-41143호~41163호(순번 1148번~1168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최신 영화를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영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87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1-7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지난 심의안건 중 영화 '○○○○'를 게시한 네이버 블로그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게시물에 대해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시정권고서를 온라인보호부를 통해 '□□□□'에 발송하였음.  
(보호원이 발송한 시정권고서를 제시하면서) 시정권고서는 시정권고 사항을 요약한 표지와 별지의 세부내용(순번, 서비스명, 게시자명, 저작물명, 게시경로, 경고·삭제 등 시정권고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붙임의 '경고문 예시'를 참조하여 OSP가 복제·전송자에게 경고문 발송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제공하고 있음.

- B 위원: 동 건과 관련하여 심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이 온라인보호부에 전달이 되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다만, 게시물별로 경고의 시정권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데에는 현재로서는 심의시스템상 제약이 있음.
- B 위원: 경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OSP에 전달할 수 있도록 양식을 별도로 만들면 되지 않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시스템상 가능 여부에 대해 온라인보호부에 다시 문의해보겠음.
- B 위원: 당초 취지는 현재의 게시물에 대해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삭제된 1분 가량의 동영상 게시물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라는 것을 표시해주자는 것이었음.
- 오진해 전문위원: 게시물별로 일일이 다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
- B 위원: 공감하는 바임. 다만, 이번 건처럼 특별한 사안에 한해서는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해보임.
- 오진해 전문위원: 관련 사유를 별도로 첨부하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상 가능한지 해당 부서에 한번 더 확인해보겠음.

- A 위원: 기존에 삭제된 동영상에 대한 사항임을 '□□□□'에 알려줄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임.
- 오진해 전문위원: 본 건과 관련해서는 온라인보호부에서 '□□□□'에 별도로 연락을 취해 오해가 없도록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음.
- A, C 위원: 모든 게시물에 대해 일일이 다 사유를 기재할 수는 없겠으나, 특별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유를 별도로 첨부하면 좋을 것으로 보임.
- B 위원: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온라인보호부에 다시 한번 전달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그렇게 하겠음.
- B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3. 안건상정

####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 B, C, D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0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947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순번은 1번~1168번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11번은 실명(2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불법 복제한 만화와 출판물을 유료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 '▲▲▲▲', '■ ■ ■ ■' 등 12건과 출판 '★★★★' 1건을 각각 50포인트에서 250포인트 정도에 판매

하고 있는 사안임. 총 13개 게시물임.

(순번 2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5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1화~14화를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순번 7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5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1권~7권을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번~11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정식으로 계약해서 발매 중인 일본 만화를 불법으로 복제한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순번 2번의 경우 정식 발매한 만화이기는 하나, 정식 번역본이 아닌 불법 번역본을 별도로 제공한 건임.
  
- B 위원: 해당 저작물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만화와 출판물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A, C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11번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2번은 익명(1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블로그를 통하여 일본 만화 '♠♠♠♠'의 정식 한국어판 전자책(e-Book)을 캡처하여 게시한 사안임(1건).

(순번 1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만화 '♠♠♠♠' 제4권의 전체분량을 우리말로 제공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2021. 4. 19. 사무처의 확인 결과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은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며, 한정된 범위의 이용자만 열람할 수 있는 서로이웃공개 설정으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됨. 게시물이 삭제·전송중단된 경우와 달리 시정권고의 대상인 심의대상 게시물이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는 점, 서로이웃을 맺은 범위의 공중에게 계속하여 제공되고 있는 것이 수월히 예상되



는 점, 언제든지 전체공개 전환이 예상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체공개 게시물과 동일하게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2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A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C, D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2번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13번~1147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

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만화, 출판,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방송 '결혼작사 이혼작곡'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390번은 모바일웹하드에서 방송 '결혼작사 이혼작곡'을 75포인트에 제공 중임. 제14화 전체분량인 1시간 7분 27초를 제공하고 있음. TV조선에서 2021. 1. 23. ~ 3. 14. 방송한 16부작 드라마임. 30대, 40대, 50대 매력적인 세 명의 여주인공에게 닥친 상상도 못 했던 불행에 관한 이야기로, 진실한 사랑을 찾는 부부들의 불협화음을 다룬 드라마임.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영화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612번은 모바일웹하드에서 영화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을 186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분량인 1시간 48분을 제공하고 있음.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에서 2020. 3. 4. 개봉한 미국 영화임.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영화 '썸머 포스트'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859번은 모바일웹하드에서 영화 '썸머 포스트'를 186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분량인 1시간 47분 14초를 제공하고 있음. 넷플릭스에서 2021. 4. 9. 공개한 미국 코미디 영화임. 어릴 적 사이가 소원해졌던 두 소녀가 성장한 뒤 우연한 계기로 만나게 되고, 슈퍼 빌런에 맞서기 위해 초능력을 발휘하는 이야기임. 넷플릭스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13번~1147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13번~1147번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출판,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3번~1147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148번~116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긴급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영화 ‘○○○○’에 대하여 심의일 기준 오전 9시까지 심의 요청된 총 26개 게시물 중 일부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음.  
(순번 1158번 채증자료를 제시하면서) ‘▼▼▼▼’에서 영화 ‘○○○○’을 제공한 사안임. 영화 전체분량을 mp4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2021. 4. 15.에 공개된 최신 한국 영화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최신 영화를 복제·전송함으로써 해당 영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순번 1148번~1168번은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1148번~1168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이 '▼▼▼▼'는 보호원에서 모니터링 한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비공개된 '▼▼▼▼'를 제외하고, 공개된 '▼▼▼▼'는 모니터링 하고 있음.
- A 위원: 해당 '▼▼▼▼'의 가입자 수가 7명 밖에 안되는데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밴드'의 가입자 수가 적지만, 누구나 이 '▼▼▼▼'를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 대상이 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1148번~1168번은 최신 영화 저작물로서,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148번~1168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

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39996호~41163호(순번 1번~1168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8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8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4. 29.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